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는 양도 담보물건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며 사용 중의
파손수리비 기타 보존 및 사용수익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통지) 채무자는 양도 담보물건의 점유에 방해되거나 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담보물의 인도)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환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환가금으로 이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가금이 채무변제에 부족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부족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권환원) 채무자가 이 채무를 완제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양도 담보물을 채무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16조(강제집행과의 관계) 이 양도담보계약의 성립은 제8조의
강제집행권의 행사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